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1 | 2024.06.24 (2024.06.17~06.2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17~06.23)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부처합동(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6/20(목)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제26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경북을 ①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 ②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③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④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 ⑤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 ⑥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는 높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지원, ▶기업에는 AI·헬스케어 등 新산업 투자 기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6/17(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리츠 도입, ② 투자 대상 및 금융투자 확대 등 리츠 투자 다각화, ③ 자금유보·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리츠 투자여력 확충 신속한 인가, ④ 행정 부담 완화 등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⑤ 투자보고서 및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⑥ 배당제도개선, 리츠 운영 내실화 등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⑦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확대 추진, ⑧ 미분양 주택 CR리츠 매입 도입, ⑨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하면서,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이번에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복수 거래시장 출범(‘25.3.)에 앞서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 등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8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자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기업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의원 등 11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4인)」** ,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및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29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30인)」** 등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국회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6/21(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해당 특검법을 단독 가결하였습니다. 금주 주요 국회의사일정으로 <교육위·과방위 등>은 의대증원 등에 대한 주요 현안질의, <문체위·농해수위 등>에서는 부처업무보고, <환노위>는 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아래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참조)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관계부처 합동) 9
-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12
- 산업부-방사청, 부처 협업으로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16
-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환경부) 17
-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금융위원회) 19
-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금융감독원) 2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2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4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5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0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림청) 3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8인) 3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3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3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3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3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7인) 3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3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3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3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0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37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3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38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40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41
•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42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4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4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45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45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46
•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의원 등 11인)	4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4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4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4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4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4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4인)	5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51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5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의원 등 29인)	5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5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5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5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5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5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3인)	57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5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5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5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30인)	6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60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문금주의원·정점식의원 등 24인)	61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의원 등 16인)	6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6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 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17~06.23) [바로가기](#)

- [바이오/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분야 및 평가 대상 선정
-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 [건설/부동산] 리츠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 [통상관세] 기업결합 관련 EU의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 개시
- [금융] 횡령·배임 혐의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 코스닥상장법인(사)에 대해서 단기간내 매매재개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소개
- [에너지·자원]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정 행정예고
-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지방시대위원회)	제2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 - SMR·반도체 소부장(구미산단)·청정수소(울진) 생산거점으로 육성 - 고속도로 확충, 영일만대교 건설로 교통 편의성 확대	2024-06-20
----------------------	---	------------

제26차 민생토론회에서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됨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신설 추진

▶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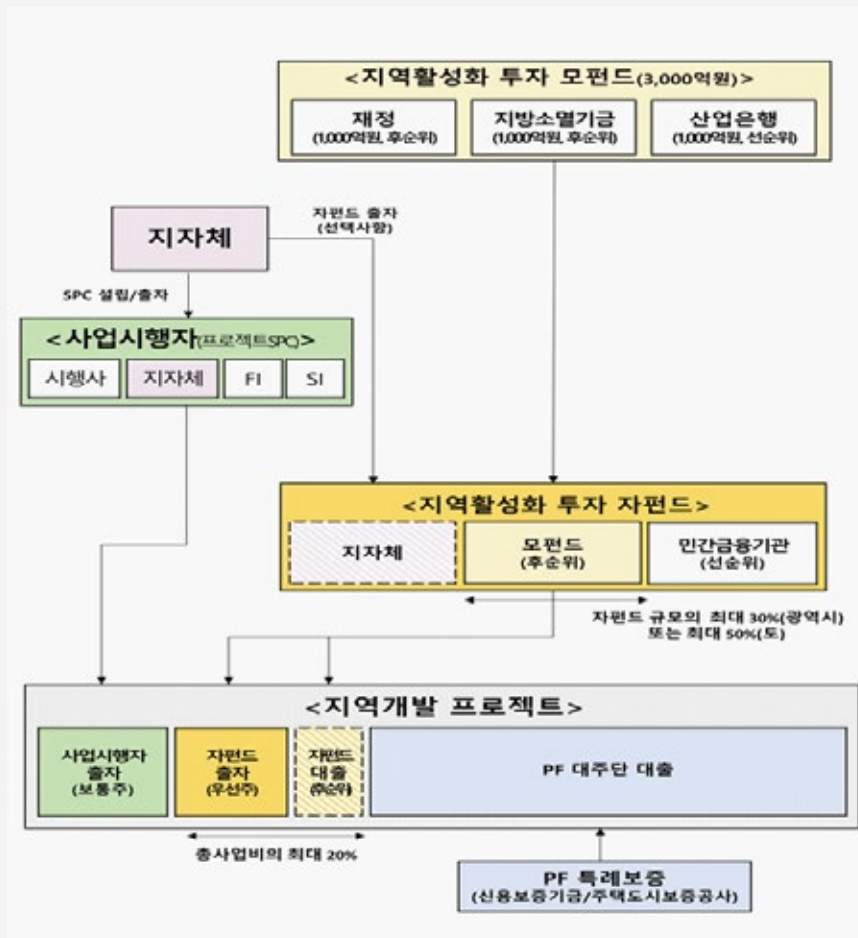
▶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경북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기획재정부)

-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도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모델의 하나로 주목

②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북

▶ 경북·대구 행정 통합 (행정안전부)

-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

▶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

▶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해양수산부)

- 정부는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21.12)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구할 계획

▶ **고속도로·국도 확충 (국토교통부)**

- 성주-대구 고속도로, 울산-경주 국도 확장, 영일만 대교 건설(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 (국가보훈부)
- 이주배경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성장 지원

③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만들어갈 계획

▶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에서는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 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

▶ **지역 벤처투자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에서는 '23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

▶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에서 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와 대기업 협업을 통해 성장을 돕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창업-BuS 신속 투자 지원 체계 >

- 3개월 내 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등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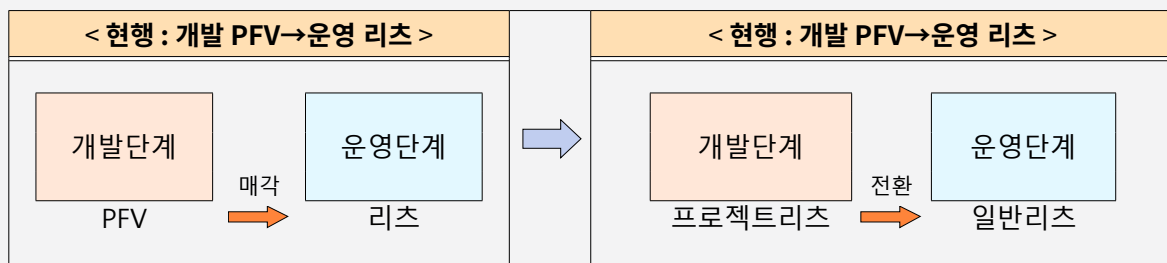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가 국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기업에는 부동산 유동화 기회를 제공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리츠(주식회사)는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이익을 공유하므로 ESG 가치 추구에 유리하다는 평가하에 50여회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수렴하여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는 높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지원, ▶기업에는 AI·헬스케어 등 新산업 투자 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6/17(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리츠 도입

- 리츠의 영업(변경) 인가 부담 완화
- 1인 주식 소유한도(50%) 완화
-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 주식 공모 시기 순연(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
- 비주택 사업 보증체계 강화

<현행 리츠와 프로젝트 리츠 비교>



구분		현행 리츠	프로젝트 리츠
개발	설립	인가	등록*(운영 전환시 인가)
	주식 분산	1인 최대 50%	X
	보고	40건(소재지, 상호, 자본금 등)	1건(투자보고서)
	공시	17건(재무제표, 최대주주 등)	X
운영	주식 공모	준공 후 2년 내 30% 이상 공모	준공 후 5년 내 30% 이상 공모

② 투자 대상 및 금융투자 확대 등 리츠 투자 다각화

- 고령화, AI 등에 대비하여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 확대

③ 자금유보 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리츠 투자여력 확충 신속한 인가

④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등 리츠 지원 거버넌스 구축

⑤ 신속한 인가, 행정 부담 완화 등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 절반 수준 단축('24.下)
- 연기금·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 허용(즉시)

⑥ 투자보고서 및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 국민의 리츠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연구용역 시행, '24.5~10)

⑦ 지역상생리츠, 공모 개선 등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⑧ 배당제도개선, 리츠 운영 내실화 등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月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개정안 발의, '24.下)
-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24.12)
-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앵커리츠가 시장 지위에 부합하는 역할 적극 이행

⑨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확대 추진

-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황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

⑩ 미분양 주택 CR리츠 매입 도입

-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세제지원

구분	현행	세제 지원내용	적용대상
취득세	중과* 적용(세율 12%)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도입('20.8)	중과배제 (세율 1~3%)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적용	'24.3.28~'25.12.31 취득분
종부세	합산 적용	합산배제 (취득 후 5년간)	'24.3.28~'25.12.31 취득분 * 준공 前 미분양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24.5.28)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중

⑪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

< 리츠 활성화 방안 >

<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 ▶ 국민에게는 높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지원
- ▶ 기업에는 AI·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 기반** 지원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편입 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리츠** 도입
- 투자 대상 및 금융투자 확대 등 리츠 투자 다각화
- **자금유보·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리츠 투자여력 확충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 선진화

-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등 리츠 **지원 거버넌스** 구축
- 신속한 인가, 행정 부담 완화 등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국민의 리츠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보고서 및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 **지역상생리츠**, 공모 개선 등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 배당제도개선, 리츠 운영 내실화 등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 역할 확대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확대 추진
- **미분양 주택 CR리츠** 매입 도입
-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 향후 계획 >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편입·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① 프로젝트리츠 도입		
▪ 프로젝트리츠 유형 신설	부투법 개정안 발의	'24.下
▪ 비주택 사업 보증체계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4.下
② 리츠 투자 다각화		
① 투자대상 확대		
▪ 리츠 투자대상 확대	부투법 시행령 개정	'24.下
▪ 헬스케어 리츠 확대	사업지 공모	'25.12
▪ 산업단지 리츠 도입 근거 마련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산업부)	'24.7
② 금융투자 확대		
▪ 모기지투자 한도 폐지	부투법 시행령 개정	'24.下
▪ 대출투자 방안 마련	행정규칙 개정	'24.下
③ 리츠 투자여력 확충		
▪ 자산재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24.下
▪ 상장리츠의 공모예외리츠 M&A 허용	부투법 개정안 발의	'24.下
▪ 자금 유보 허용	부투법 개정안 발의	'24.下
2.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 선진화		
① 리츠 지원 거버넌스 확립		
▪ 리츠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마련	방안 마련	'24.12
▪ 리츠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촉 방침 결정	'24.7
②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①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개선		
▪ 불필요한 절차 생략 및 서류작성 최소화	안내	'24.下
▪ 연기금·공제회 주주 리츠 블라인드 투자 허용	안내	즉시
② 보고·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		
▪ 보고·공시 사항 조정	부투법 개정안 발의	'24.下
③ 처벌·제재 규정 정비를 통한 감독 실효성 확보		
▪ 처벌·제재 규정 정비	개선안 마련	'24.下

< 리츠 활성화 방안 >

3. 국민의 리츠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① 리츠 정보의 접근성 제고		
▪ 투자보고서 개편	행정규칙 개정	'24.下
▪ 리츠 정보시스템 개선	시스템 오픈	'24.9
② 일반 투자자 참여 제고		
▪ 지역상생리츠 도입	방안 마련	'24.12
▪ 공모기한 확대 및 주식 분산 적용 시점 개선	부투법 개정안 발의	'24.下
③ AMC 업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		
▪ 업무 표준화	질의사례집 마련	'24.12
▪ 개발사업 역량 강화	행정규칙 개정	'24.下
④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 배당 개선	부투법 개정안 발의	'24.下
▪ 리츠 운영 내실화	연구용역	'24.12
▪ 앵커리츠 장내 거래 허용	리츠 변경인가	'24.7~
4.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 역할 확대		
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추진		
▪ 참여 시공사 범위 확대	HUG 내규 개정	'24.6
② 미분양 CR리츠 도입		
▪ 모기지보증 대상 포함	HUG 내규 개정	'24.7
③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방안 발표	육성 방안 발표	'24.7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산업부-방사청, 부처 협업으로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화
-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에서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소재부품기술 로드맵 확정

2024-06-13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양 부처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군을 대상으로 107개의 방산 소재·부품 기술 수요를 발굴하였고, 국방 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존도, 공급망 안전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함

양 부처는 동 로드맵을 토대로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임. 특히, 민·군 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엔진 소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 도전적인 부처 연구개발(R&D)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기로 함

향후에도 양 부처는 동 협의체를 통해 방산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협업 연구 개발(R&D) 과제 지속 발굴 등 부처 간 소재·부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
- ② 부처 협업 R&D 추진 방안
- ③ 민·군기술협력사업 발전방향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24-06-20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함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³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년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년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Nm³은 ‘표준 입방미터’로 읽으며, 온도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의 부피를 의미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됨. 작년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 (공공)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 (민간)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22년 기준 52개소)

-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의 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기준 마련
-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

-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통합시설 설치 : ('22년) 신규 3개소 → ('23년) 누적 7개소 → ('24년) 누적 15개소

-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 개선
-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
- 동식물성 잔재물 등 기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

③ 생산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m³에서 30만Nm³로 늘림
-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수소 생산시설 설치: ('23년) 신규 2개소 → ('24년) 누적 4개소

-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

* 국제해사기구(IMO)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08년 대비 50% 100%, '23.7)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메탄올과,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생산한 메탄올을 포함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

비전	친환경E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기반 구축		
목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최대 5억m ³ /년 생산 추진 * 연간 2,294억원의 LNG 대체 경제효과, 온실가스 100만톤(CO ₂ eq) 감축효과 기대		
중점 추진 과제	1. 가스 생산 확대	2. 가스 이용 확대	3. 운영·관리 구축
	① 생산목표제 시행 ② 통합 생산기반 구축 ③ 기술 고도화	① 기존 수요처 확대 ② 신규 수요처 발굴	① 전주기 관리 ② 시설 관리 강화 ③ 전문인력 양성

금융위원회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락처”를 위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간 업무협약(MOU) 체결

2024-06-20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락처”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하여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을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함께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음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협력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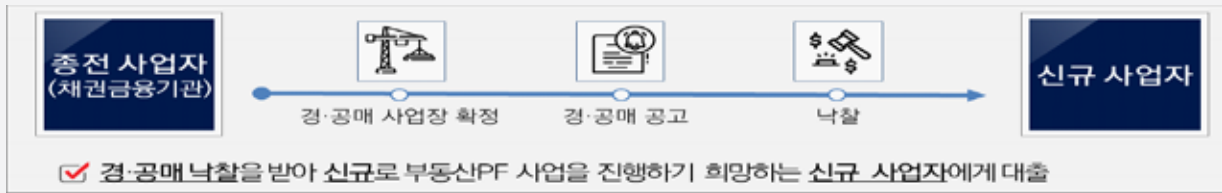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세부 요건으로는

< 공통 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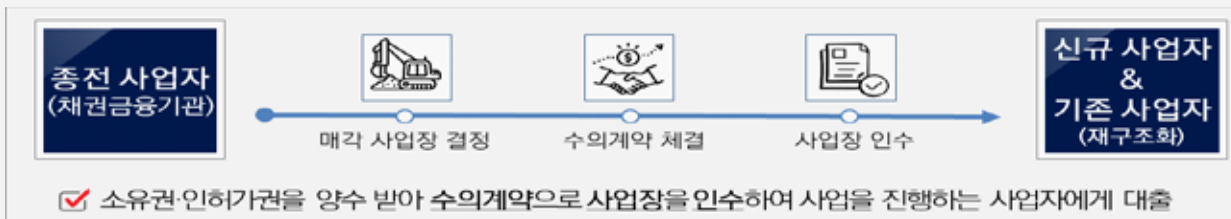
- ◇ (규모) 우선 1조원 조성 후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대출 (은행 80%, 보험 20% 비율)
- ◇ (대상사업장)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
 - *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
- ◇ (최소 여신금액) 최소 300억원 이상 (단,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① 경락자금대출



- (대상차주) 부동산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
- (대상사업장)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포함)

② 자유판매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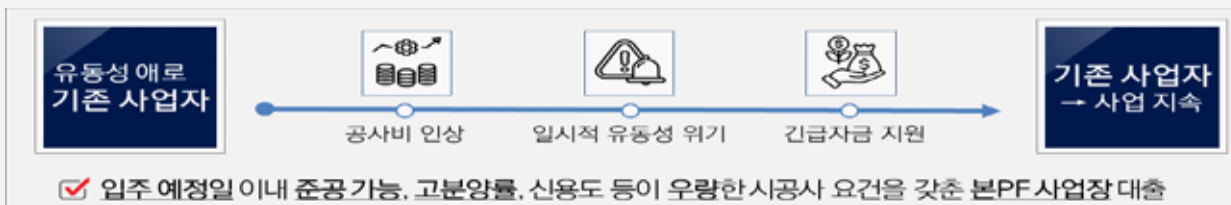
- (대상차주) 수익계약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
- (대상사업장) 경락자금대출 대상 사업장 요건과 동일 (브릿지론은 토지매입 완료,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 등)

③ NPL 투자기관 대출



- (대상차주) 부동산 PF 사업장의 NPL을 할인매입* 하고자 하는 공신력 있는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
- (대상사업장) 경락자금대출 대상 사업장 요건과 동일 (브릿지론은 토지매입 완료,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 등)

④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 (대상차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사의 일시적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으로서 본PF 여신이 없거나, 본PF가 있는 경우 기존 여신을 포함하여 리파이낸싱(증액 리파이낸싱 등)을 계획하고 있는 차주
- (대상사업장)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

금융감독원은 복수 거래시장 출범('25.3.)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증권사는 향후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KRX 또는 ATS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여 증권사가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복수 거래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
- ②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통합호가)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
- ③ (최선집행 일반 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며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함
- ④ (적용 예외)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음
- ⑤ (기타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공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21 시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4조제4항제5호에 따라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85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를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의8 신설, 제14조의4제4항 신설, 제14조의4제5항 신설, 제18조제2항제2호 등)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20 시행 (다만,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등 일부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	----------------------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무기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아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됨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가격을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거주무기자가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전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 마련 (제60조의3 신설)

-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주의자 등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주의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② 전매제한기간 만료 전에 전매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절차 마련 (제73조제5항 신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전매하려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 (제82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시 매입가격 마련 (제82조의2제4항 신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거주주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 거주주의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18 시행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허가권자가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경우 감경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0424호, 2024. 3. 26. 공포,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용적률 기준의 완화 적용 근거 마련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②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 추가 (제18조의2제2항제1호)**
 -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함
- ③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 (제6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함
- ④ **지하층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63조의6 신설)**
 -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함
- ⑤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상향 조정 (제11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및 같은 항 제1호)**
 -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2024-06-18 시행

중고자동차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20조제3호, 제21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024-06-18 시행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2024. 6. 18. 공포 · 시행)됨

이에 따라, 수출 이행 여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및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연식(모델연도)’을 ‘제작연월’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37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3 시행 예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원의 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확대 (제5조)

-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 개 법률을 추가함

②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 (제8조의2 신설)

-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③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 (제25조의2제3항 신설)

-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 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 ·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 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④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 (제25조의4제1항 신설)**

-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7. ~06.27.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6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경미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구개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 정비 (안 제7조의2)

- 現 시행령의 경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他 법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거나 모호하여, 특구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구체화
- (경미한 사항)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면적 구체화(기준면적 신설 등)하고,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미만의 연장, 1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 등

②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내용 신설 (안 제33조의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2024.1.23., 시행 2024.7.24.)에 따른 시행령(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 마련
- (입주관리시스템 처리 업무)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특구 내 입주기업과 특구진흥재단 간 입주 계약·해지, 부지·시설물 양도신고, 산업단지 관리 등 처리

③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42조)

- (권한의 위임) 특구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사항(특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로 위임
- (업무 위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위탁업무에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mailto:과학기술정보통신부_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화: 044-202-4744, 팩스: 044-202-6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1. ~07.31.
-----------	------------------------------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②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명시 (안 제2조)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tel:044-202-6466) (전화: 044-202-6466, 팩스: 044-202-6037)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9.
~07.18.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안 별표1)
- ② 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 (안 제3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④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 (안 제15조)
- ⑤ 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 (안 제9조의2)
- ⑥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 (안 제15조)
- ⑦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tel:044-201-3689) (전화: 044-201-3689, 팩스: 044-201-556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1.
~08.01.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 (안 제208조의3제2항)

-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공시
* 순보유잔고: 보유하고 있는 증권수량 -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수량
-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 보고
- 순보유잔고 보고를 기초로 공매도잔고 통계가 제공되나, 통계와 공시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공시 확대 요구 지속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02-2100-2652, 팩스: 02-2100-2648\)](tel:02-2100-2652)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6.17.
~06.24.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가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업한 2종나무병원의 1종나무병원으로 등록시 신청서류 간소화 (안 제19조의6제2항)

-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가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

※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전화: 042-481-4064, 팩스: 042-481-4109\)](tel:042-481-406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8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2024-06-20 발의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안 제542조의 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 (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2024-06-20 발의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전자투표 실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3), 적어도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14 신설)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2024-06-19 발의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7인)

2024-06-19 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 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 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 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 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 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 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제1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2024-06-20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당수 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어 대 화조차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 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의 권 익향상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을 억압하며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임.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2024-06-20 발의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인수·합병의 방식은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share acquisition)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주식인수형 거래의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

이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133조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2024-06-20 발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이 대차(대주) 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수기(手記)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환경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보다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2024-06-20 발의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4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20인)

2024-06-17 발의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였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의25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2024-06-20 발의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국내·외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4-06-20 발의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안 제109조의2)
- ②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 (안 제126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06-19 발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8인)

2024-06-17 발의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업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6조)
- ④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점검·분석,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지정하고, 인공지능사회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⑥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5조)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⑨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⑩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윤리원칙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23조)
-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인·기관·단체 등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 ⑫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해당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 ⑬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28조)

- ⑭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일정 성능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안 제29조 및 제30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등 19인)

2024-06-19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잠재적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③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실증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⑥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⑦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4-06-19 발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용이 가능한 AI솔루션 개발의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③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 (안 제10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 ⑧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함 (안 제24조)
- ⑨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안 제26조)
- ⑩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안 제27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06-17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 (안 제2조)
- ③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④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 (안 제10조)
- 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 (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 ⑥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4-06-18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

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함 (안 제2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6조)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 (안 제11조)
- ⑦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2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2024-06-20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 AI,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의원 등 11인)

2024-06-18 발의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광고시장은 19조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음 (안 제4조)

- ③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9조)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1조)
- ⑥ 광고수용자는 허위·기만·과장 표현 등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안 제14조)
- ⑦ 광고사업자는 광고수용자의 보호와 바람직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사업자 및 광고매체사업자는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15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2024-06-19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3인)

2024-06-19 발의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2024-06-19 발의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 95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절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 ④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는 상황임. 쌀 및 주요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절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수산물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③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4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2 신설)
-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3 신설)
- ③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④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⑤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안 제34조)
- ⑥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 (안 제39조)
- ⑦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하며,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반도체가 다량으로 필요한 자동차, 전자 분야에 유수의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및 로봇 등의 성장으로 국내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필연적 과제임

반도체 수요에 더하여 전기차, 자율자동차 및 최신 전자장비 기술이 적용된 첨단자동차까지 가세하면서,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 특히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크게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되는데, 현재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시장 점유율 또한 1%에 그칠 정도로 반도체 설계분야는 뒤쳐져 있는 실정임. 이는 반도체 설계의 경우 고급 설계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반도체설계재산이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로 정의함 (안 제2조제6호 신설)
- ② 정부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38조의2 신설)
- ③ 정부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반도체 설계재산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38조의3 신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38조의4 신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38조의5 신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38조의6 신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38조의7 신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생산(파운드리)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왔지만, 시대가 흘러 AI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전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임. 또한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까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바, 전세계는 AI반도체가 촉발한 ‘반도체의 또다른 미래’를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음. 전세계가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상,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및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반도체산업을 통한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 확립’을 통한 반도체산업 및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6조)
- ③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9조)
- ④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안 제10조)

- 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추진 등을 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⑥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하여야 함 (안 제13조)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14조)
- ⑧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안 제16조)
- ⑨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안 제18조)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안 제19조)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안 제20조)
- ⑫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함 (안 제24조)
- ⑬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안 제25조)
- ⑭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안 제2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2024-06-20 발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 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7인)

2024-06-21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는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11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62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2024-06-17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41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3인)

2024-06-17 발의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텅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 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2024-06-19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2024-06-19 발의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제31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 (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06-18 발의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30인)

2024-06-2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 (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2024-06-20 발의

현행법령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시설의 의무 설치 범위에 노인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대표적인 시설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주거지 내 노인에게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신설)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남해안권”이란 남해안에 연접한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관할구역을 말함 (안 제2조제1호)
- ② “남해안관광진흥지구”란 남해안에 있는 강·섬·갯벌·해안 등 해양자원과 문화·역사유산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지구를 말함 (안 제2조제2호)
- ③ 안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장(이하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 ④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를 둠 (안 제23조)
- ⑥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둠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남부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함

또한 강,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으로 목적으로 정함 (안 제1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5조)
- ③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④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⑤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부권개발사업이 남부권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 (안 제9조)
- ⑥ 남부권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⑦ 남부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안 제17조, 18조 및 22조)
- ⑧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23조)

- ⑨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설치함 (안 제25조)
- ⑩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 ⑪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부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부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32조)
- ⑬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 강·섬 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안 제33조 등)
- ⑭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2024-06-2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창원·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교육위	전체회의	6/25(화) 10:00	- 현안질의 (의대 증원, 유보통합 등)
과방위	전체회의	6/25(화) 14:00	- 현안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등)
문체위	전체회의	6/24(월) 10:00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농해수위	현장시찰	6/24(월) 15:00	- 현장시찰 (미곡종합처리장(RPC), 한우농가 등)
	전체회의	6/27(목) 10:00	- 소위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법안 심사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환노위	전체회의	6/26(수) 10:0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공청회
	전체회의	6/27(목) 10:00	-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전체회의	6/27(목) 14:0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공청회
	전체회의	6/28(금) 10:00	- 업무보고 등
국토위	전체회의	6/25(화)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24(월) 10:00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미래혁신과제 특강	김기현·한병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4(월) 13:30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4(월) 14:00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김주영·박해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6/24(월) 14:0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 미와 22대 국회의 입법 과제 토론회	정춘생·남인순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6/24(월) 14:00	철도지하화 정책토론회	엄태영·박덕흠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6/24(월) 14:00	한국환경회의의X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세미나	이용우·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5(화) 13:00	일요일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박주민·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5(화) 14:00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오픈 세미나	강유정·김윤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6/25(화) 14:00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이해민·김준형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25(화) 14:00	중독(中毒) 우리 국민이 위협하다 : 국가 수준 중독치료· 재활 체계의 필요성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5(화) 16:0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백승아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6/25(화) 18:00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남겨진 과제들	이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6/26(수) 09:30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6(수) 10:00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이수진·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6(수) 10:00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제 22대 국회의 역할	박정현·신정훈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26(수) 14:00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김윤·박주민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26(수) 14:00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김주영·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6(수) 15:00	김대중의 성평등, 함께 여는 미래	이재정 의원실 등	국회박물관 대강당
6/26(수) 15:00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의 합의와 활용방안	윤호중 의원실, 한일의원연맹	의원회관 2간담회실
6/26(수) 15:30	[국회기후변화포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6(수) 17:00	[노동입법 세미나 1강] - 노동헌법의 의미	김주영 의원실, 민주노총 등	의원회관 306호
6/27(목) 10:00	비트코인 ETF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와 미래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7(목) 13:30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임미애·염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7(목) 14:00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정춘생·신장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7(목) 14:00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은혜 의원실, 한국조세정책학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7(목) 15:00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서왕진·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6/27(목) 16:00	AI와 함께하는 미래 : 정치환경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윤재옥 의원실, 경제사회연구원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8(금) 12:00	[노동입법 세미나 2강] -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 구조와 체계 (노조법, 근기법 등)	김주영 의원실, 민주노총 등	의원회관 306호
6/28(금) 14:00	군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6/28(금) 14:00	수리권 보장 :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8(금) 15:00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김윤·서영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자료집 등	6/24(월)	「THE 현안」 제16호 발간 - 사이버안보	국회도서관	
	6/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8호 발간 -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6/26(수)	「World&Law」 제12호 발간 - 근무시간 외 연락하면 벌금이라고?		
	6/26(수)	「금주의 서평」 제684호 발간 - 도서명 : 불편한 연금책 저자 : 김태일		
	6/27(목)	「현안, 외국에선?」 제85호 발간 - 미국의 이민 문제와 프랑스의 이민법 개정		
	6/26(수)	「2024 NABO 경제동향」 제4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6/27(목)	제22대 국회 개원 대비 「정책자료집 II」 발간		
	6/28(금)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7호 발간		
	6/25(화)	「제16차 노인인권포럼」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6/27(목)	[국회개원 기획세미나] - 4·10총선 분석과 제22대 국회 전망		
	6/24(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17(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4호)」 발간	국회사무처	
	6/17(월)	「THE 현안」 제15호 발간 - 국가안보	국회도서관	
	6/19(수)	「금주의 서평」 제683호 발간 - 도서명 :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저자 : 마리아 투마킨		
	6/20(목)	「현안, 외국에선?」 제84호 발간 - 미국의 경제 현황: 제118대 의회 이슈		
	6/20(목)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6/17(월)	「이슈와논점」 제2248호 발간 - 수자원 분야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6/17(월)	「NARS 브리프」 제42호 발간 -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		
	6/18(화)	「이슈와논점」 제22449 발간 - 「미술진흥법」 시행 임박, 미술계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가		
	6/20(목)	「이슈와논점」 제22450 발간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6/21(금)	「이슈와논점」 제22451 발간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17~06.2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17(월)	바이오/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분야 및 평가 대상 선정
6/18(화)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6/18(화)	건설/부동산	리츠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6/19(수)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6/20(목)	통상관세	기업결합 관련 EU의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 개시
6/20(목)	금융	횡령·배임 혐의로 실질심사를 받게 된 코스닥상장법인(사)에 대해서 단기간내 매매재개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소개
6/21(금)	에너지 · 자원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정 행정예고
6/21(금)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